

#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번	안 호	315
--------	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2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 □ 개정사유

-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청원학생야영장을 설치하고자 함.
-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(대통령 제14042호, '93. 12. 31.)에 의거 "교육행정"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직급명칭을 개정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'91. 3. 1.자로 폐교된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593번지에 위치한 미원국민학교 운암분교장을 학생야영장으로 전용코자 청원학생야영장을 설치함 (안 별표 1).
- 직급명칭 "지방행정사무관"을 "지방교육행정사무관"으로 함 (안 제5조).

## □ 개정근거

-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(교육기관의 설치)
-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(설치 승인)
- 청소년기본법 제12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(대통령령 제14042호, '93. 12. 31.)

## □ 조 례 안 : 덧붙임

## □ 기타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- 청원학생야영장 설립계획안 : 덧붙임
- 청원학생야영장 설치승인 공문서 사본 : 덧붙임
-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- 예산 조치사항 : 청원학생야영장 설립계획안 참고

##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중 "지방행정사무관"을 "지방교육행정사무관"으로 한다.

[별표 1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 별표 1 ]

### 명 칭 및 위 치

명 칭	위 치
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	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 4번지
중원학생야영장	충청북도 중원군 가금면 가흥리 172번지
제천학생야영장	충청북도 제천군 청풍면 학현리 산 18-36번지
옥천학생야영장	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016번지
영동학생야영장	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643번지
청천학생야영장	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 201-1번지
괴산학생야영장	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102번지
음성학생야영장	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335번지
음성학생야영장 조촌분원	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549번지
청원학생야영장	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593번지